

#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77호 2022. 8. 5.(금요일)

##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523호 하동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
- 하동군 조례 제2524호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 . . . . 5
- 하동군 조례 제2525호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 . 6
- 하동군 조례 제2526호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8
- 하동군 조례 제2527호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 . . . . 9
- 하동군 조례 제2528호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

## 규 칙

- 하동군 규칙 제1255호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1

## 훈 령

- 하동군 훈령 제385호 하동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14

##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21-13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하동읍 화심리 41) . . . . . 25
- 하동군 고시 제2021-135호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 . . . . 26
- 하동군 고시 제2021-136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 . . . . 27
- 하동군 고시 제2021-138호 하천 점용허가 고시(하기\*) . . . . . 29
- 하동군 고시 제2021-139호 하천 점용허가 고시(공영\*) . . . . . 29
- 하동군 고시 제2021-144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숲촌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 . . 30
- 하동군 고시 제2021-143호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 . . . . 31
- 하동군 고시 제2021-145호 하천 점용 허가고시(운명\*) . . . . . 38
- 하동군 고시 제2021-146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병천) . . . 39
- 하동군 고시 제2021-147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 고시(진교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42
- 하동군 고시 제2021-148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고시 . . . . . 43
- 하동군 고시 제2021-149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 . . . . 44
- 하동군 고시 제2021-154호 2022년사방지 변경 지정 고시 . . . . . 46

## 일 반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22-1002호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관련 법정민원 만족도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협조 47

회 람									
--------	--	--	--	--	--	--	--	--	--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8월 5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조례 제 2523 호

하동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화개면사무소의 소재지란 중 “원탑1길 6”을 “쌍계로 71-9”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하동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

기 관 명	소 재 지	기 관 명	소 재 지
하동군청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금남면사무소	하동군 금남면 미법마을길 10
하동읍 행정복지센터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70	금성면사무소	하동군 금성면 신도길 149
화개면사무소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71-9	진교면 행정복지센터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안길 62
악양면사무소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357	양보면사무소	하동군 양보면 진양로 736
적량면사무소	하동군 적량면 대티길 9	북천면사무소	하동군 북천면 경서대로 2451
횡천면사무소	하동군 횡천면 경서대로 1175-3	청암면사무소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672
고전면사무소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성로 349	옥종면 행정복지센터	하동군 옥종면 덕천로 3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8월 5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조례 제 2524 호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군에 최근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군에서 해당사업을 6개월 이  
상 계속하여 영위한”을 “군내에 사업장을 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8월 5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조례 제 2525 호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중 “본인”을 “본인 및 유족”으로 한다.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유족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 유족. 다만,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에 따른 보국수훈자 유족

③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순위자 한명에 한정하고, 이를 승계할 수 없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b>보훈예우수당 지급(변경) 신청서</b>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보훈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예 금 계 좌	금 용 기 관 명		예금주 성명	
	계 좌 번 호			
변경사유		예) 신규, 전입(일자: )		
「하동군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읍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읍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지급신청] 1.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주민등록초본)	
	[변경신청]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p>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함)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p> <p>※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당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p> <p>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하동군</p> <p>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보훈예우수당 지원사업</p> <p>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항목 : 신청서기재사항(성명, 보훈번호, 주소, 생년월일, 사망일자, 전화번호, 예금계좌 등)</p> <p>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훈예우수당 지원기간까지</p> <p>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고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읍면 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p> <p style="text-align: center;"><b>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b></p>				
신청인 (서명 또는 인)				
<b>하동군수</b> 귀하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8월 5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천



하동군 조례 제 2526 호

###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설치 및 존속기한)”을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하동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자활기금 운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8월 5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조례 제 2527 호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의 감면율을 100  
분의 50으로 한다.

- 1.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 제29조제1항제19호·제20호 또는 제25호에 따른 경우
-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공유재산 운영상황을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8월 5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조례 제 2528 호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전략산업 투자기업 지원) 군수는 군의 입지여건에 적합하면서 성장잠재력이 유망하고 도시기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규칙으로 정하는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또는 시설보조금을 지원하거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략산업 투자기업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투자지원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8월 5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규칙 제 1255 호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 재 정 보 증 서

보증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로서 보증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보증인(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채무자가 하동군에 대한 제1조에서 정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채무를 이행하며, 이 재정보증서 각 조항을 확인한다.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 ① 보증인은 아래의 피보증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채 무 자 성 명	
채 무 자 주 소	
채 무 약 정	년 월 일자 약정서
채 무 금 액	금 원
상 환 기 일	년 월 일
이 자 율	연 % (단, 연체이자 7%)

② 보증인은 자신이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내용을 아래란에 자필로 기재한다. 이 경우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란에 연대보증임을 기재한다.

보증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피보증채무금액	금	원
보증의 범위 (보증채무최고금액)	금	원
연체이자율	연 %	
특약사항		

**제2조(보증서의 교부)** ① 하동군은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서 및 용자결정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상환 완료 후 보증인은 재정보증서 및 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이의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하동군은 재정보증서 및 관계서류를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제3조(상 계)** 보증인은 채무자의 하동군에 대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서 하동군에 대항할 수 있다.

**제4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하동군이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통지의무 등)** ① 하동군은 채무자가 원금,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하동군은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영수증 등의 교부)** 하동군은 보증인으로부터 이자, 원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영수증 및 대출잔액 확인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붙임 1. 재산세납부증명서 1부.  
2. 자본금 5억 이상 소명자료 1부.(법인에 한함)

년 월 일

하 동 군 수 귀 하

「하동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발령한다.

2022년 8월 5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훈령 제 385 호

하동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하동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접수증을”을 “접수증,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중 “정하여 1차에 한하여”를 “정하여”로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연장”을 “1회 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안내문을”을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을 “사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않거나 종결한 경우”를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한 경우”로,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사실”을 “종결한 사실”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19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21조에 따른 종결 처리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군에 이첩·송부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로, “제출하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군수는”을 “누구든지”로, “소속직원”을 “공익신고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수는 소속직원이”를 “누구든지”로, “소속직원에게”를 “공익신고자등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속직원”을 “공익신고자등”으로 한다.

제26조 중 “공익신고자로”를 “공익신고자등으로”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징계를”을 “이를”로 하고, 기존의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에게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28조제1항 중 “공익신고자”를 “공익신고자등”으로, “경우”를 “경우 이를”로 한다.

제29조제1호 중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7호 중 “처분”을 “판결”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8.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으로 한다.

제32조제3호 중 “원상회복 관련”을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서식을 다음의 별지 제1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서식 1]

신 고 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일
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소속		
피신고자	이름			
	소속	주소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직위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연락처	알고 있는 경우 기재
공익신고 취지 및 이유				
공익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별첨가능			
타기관 신고 및 쟁송 여부 등	<input type="checkbox"/>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동일한 내용을 신고한 사실 있음 (신고기관 :                      신고일 :                      조치결과 :                      ) <input type="checkbox"/> 민사·형사·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및 이에 준하는 절차 진행 중 또는 완료 (                      )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하 동 군 수 귀 하

■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서식 4]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공익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p>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p> <p>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p>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하 동 군 수 귀하



■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서식 6]

20 년 월 일 접수
20 공익 제 호

접수자	공익신고 책임관

공 익 신 고 기 록

신고제목			
담당부서		담 당	
신고자 성명		피신고자성명	

처 리	조사종료일	20 년 월 일	내 용	
	이 송 일	20 년 월 일	이송기관	
	결과통보일	20 년 월 일	대상자 (대상기관)	

신분공개 동의여부	조사기관	수사기관	중결확인	담당	공익신고책임관
종 결 일	20 . . . . .				
보존기간	년 ( 20 . . . . . 까지 )				

■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서식 7]

#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제19조제2항 관련)

##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급 대상자	지 급 요 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부과금액의 4%~20% 지급)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하동군 및 그 소속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하동군 및 그 소속기관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 각급기관에서 지급받은 보·포상금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보다 적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차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 신고제도안내 > 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호·포상)' 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98, 110

■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서식 8]

###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 우리 기관에서 이송한 공익신고 사항 처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 공익신고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및 피신고자 보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제5항, 제12조 제1항)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 1.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 조사기관등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종료 후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법 제12조 제1항)

가.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됨

나.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및 수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다. “나”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됨

○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조사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해야 합니다.

#### 2. 공익신고 처리 시 유의사항

○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10조 제5항)

■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서식 9]

### 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신고제목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처리결과	
결과통보일	

신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이의신청 이 유	
-------------	--

공익신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하 동 군 수 귀하

■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서식 10]

(앞쪽)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추천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90일	
① 추천기관	추천기관명					
	소관부서	(전화번호)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소 속					
	직업(직위)					
	[ ] 내부 공익신고자		[ ] 외부 공익신고자			
	[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③ 추천사유						
④ 공익신고 조사결과	신고기관		신고일자	20 년 월 일		
	신고내용					
	조사수사기관		결과통지일자	20 년 월 일		
	통지내용					
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수령여부	[ ] 있음 (금액 : ) [ ] 없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⑥ 추천인 : 직위 성명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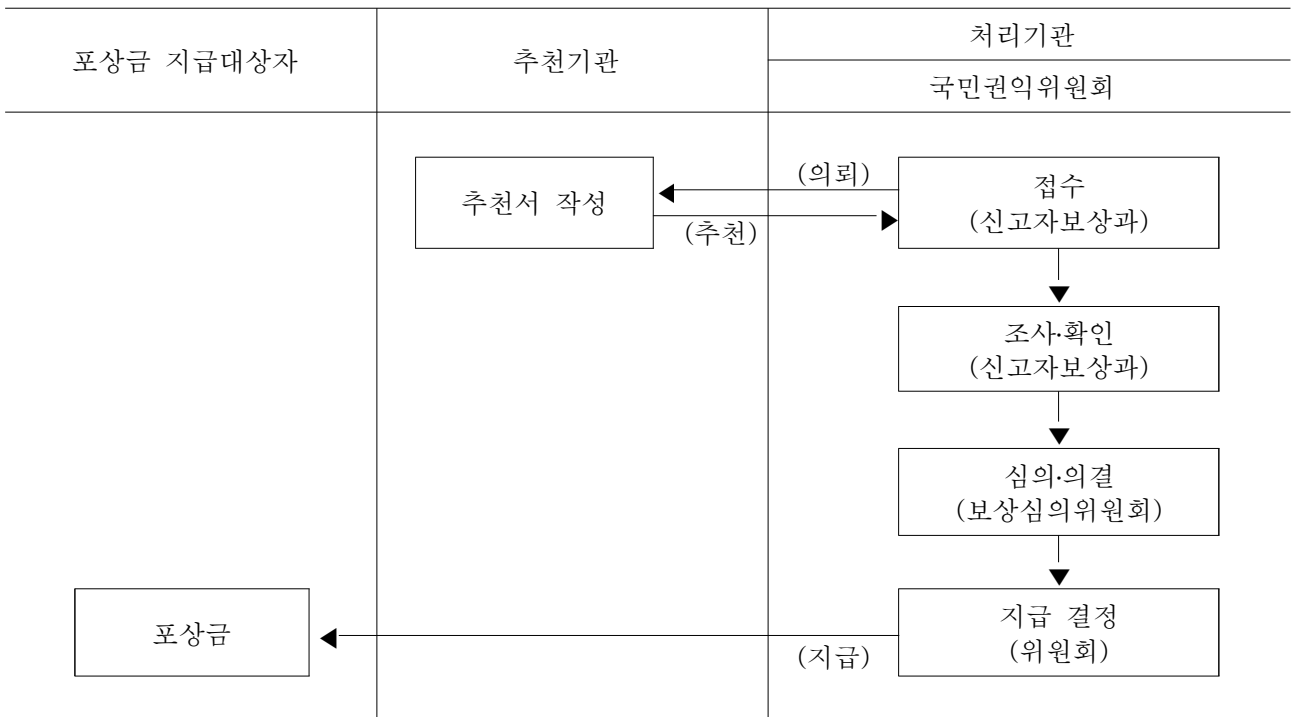
※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자료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작성요령

1. ① 란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명, 소관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② 란에는 추천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및 소속과 직업을 기재하고, 내부 공익신고자인지 외부공익신고자인지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또한, 제22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구하였음을 [ ]에 ✓를 표시합니다.
3. ③ 란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하는 사유를 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기재합니다.
4. ④ 란에는 신청인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기관명, 공익신고일자와 신고내용의 요지, 공익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과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처리결과의 요지를 기재합니다.
5. ⑤ 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공익신고를 이유로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 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6. ⑥ 란에는 추천기관의 소관 부서장의 직위와 이름을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합니다. 다만, 동 추천서를 추천기관의 관인이 날인된 공문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이 추천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서식 11]

## **<<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

### **□ 신고를 준비하실 때**

- 언론, 시민단체는 공익신고기관이 아닙니다.
  - 언론, 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는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기관(국민권익위, 관련 행정기관·감독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주시십시오.
-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주십시오.
  - 구체적인 자료·기록 등이 없는 단순 주장, 일반에게 공개된 자료(예. 언론스크랩)만으로는 증거 부족으로 신고가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 효율적 신고 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 중복 신고를 자제해 주십시오.
  - 다른 기관에서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신고 종결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관 신고 후 타 기관 신고, 또는 타 기관 신고 후 우리 기관에 신고하시면 신고가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신고를 접수하실 때**

- 허위신고, 금품·근로관계상 특혜 요구와 같은 부정한 목적 신고는 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고 이후라도 추후 허위신고나 부정한 목적 신고로 확인되면 소급하여 신고자 지위가 상실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신고자가 직무상 비밀을 신고내용에 포함하신 경우는 공익신고기관 외(예. 언론)에 신고내용을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도록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협조사 보호조치를 신청하실 때**

- 신고자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해 법상 보호조치 신청은 어렵습니다.
  - 그러나, '구조금' 제도가 있어 신고로 인한 재판절차에 비용(예. 변호사 수임료)을 지출하셨다면 국민권익위에 비용 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언론에 공개 인터뷰를 하시면 신분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공익신고나 보호신청 시 위원회에 신분공개 비동의 표시를 하셨더라도, 언론에 신분공개를 동의하신 경우는 타인이나 다른 언론사 등이 신분을 공개하는데 동의했다고 보아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을 더 이상 받기 어렵습니다.

###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을 신청하실 때(내부공익신고자에 한함)**

- 보상금은 최초 산정된 금액에서 감액이나 지급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증대된 국가·지자체 수입의 4~20%를 지급하지만, 감액·지급제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상금, 중복 지급받은 보상금 등은 환수됩니다.

하동군 제2022-133호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아 래 -

점용자	주 소	하천 명칭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유효기간
하동군수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섬진강	하동군 화심리 41외 8필지	20,136㎡	항공방제를 위한 헬기 이착륙장	2022. 7. 12. ~2022. 7. 16.

2022년 7월 11일

하 동 군 수



### 하동군 고시 제2022-135호

#### 지적기준점성과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기준점성과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 07. 14.  
하 동 군 수

기준점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원점	평면좌표		표고	소재지	설치일 (관측일)	표지 재질	비 고
명칭	번호	위도	경도		X	Y					
지적도근점	W6465	35-08-00.2061	127-41-39.1865	중부	282114.06	263271.44	10.400	악양면 평사리 1217	2022-03-2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6466	35-08-21.1894	127-41-13.9197	중부	282756.29	262627.3	11.460	악양면 평사리 1104-7	2022-03-2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6467	35-08-23.8452	127-41-10.6071	중부	282837.56	262542.87	11.430	악양면 평사리 1104-5	2022-03-2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6468	35-08-33.0960	127-40-58.6407	중부	283120.57	262237.98	17.280	악양면 평사리 1239-11	2022-03-2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6469	35-09-00.6585	127-40-26.6168	중부	283964.47	261421.56	15.830	악양면 평사리 1239-11	2022-03-2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6470	35-09-06.3348	127-40-18.2450	중부	284137.98	261208.48	17.520	악양면 평사리 산82-5	2022-03-2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6471	35-09-11.7980	127-40-08.3109	중부	284304.65	260955.9	16.110	화개면 부춘리 1169	2022-03-2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6472	35-09-21.1126	127-39-59.6781	중부	284590.24	260735.47	18.270	화개면 부춘리 775-1	2022-03-2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6473	35-09-22.9964	127-39-54.0849	중부	284647.35	260593.51	15.810	화개면 부춘리 799-2	2022-03-2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6474	35-09-27.6765	127-39-43.8659	중부	284789.86	260333.91	21.870	화개면 부춘리 837-4	2022-03-2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6475	35-09-30.8263	127-39-40.0094	중부	284886.28	260235.66	25.190	화개면 부춘리 907-5	2022-03-2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6476	35-09-44.6289	127-39-25.1174	중부	285309.16	259855.94	14.100	화개면 부춘리 982-18	2022-03-2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6477	35-09-53.7053	127-38-43.9180	중부	285582.05	258811.45	21.510	화개면 부춘리 585-10	2022-03-2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6478	35-10-05.0318	127-38-39.6841	중부	285930.42	258702.04	18.000	화개면 부춘리 577-2	2022-03-2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6479	35-10-15.1684	127-38-31.7478	중부	286241.51	258499.18	19.490	화개면 덕은리 176-10	2022-03-2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6480	35-10-19.1913	127-38-27.3888	중부	286364.78	258388.08	20.490	화개면 덕은리 194-4	2022-07-13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6481	35-10-22.1403	127-38-22.3658	중부	286454.85	258260.38	19.360	화개면 덕은리 947-1	2022-03-2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6482	35-10-31.1489	127-38-15.3710	중부	286731.34	258081.6	20.280	화개면 덕은리 971	2022-03-2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6483	35-10-32.9584	127-38-05.1050	중부	286785.45	258821.47	20.540	화개면 덕은리 산27-1	2022-03-2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6484	35-10-36.3570	127-37-59.4236	중부	286889.27	257677.04	18.560	화개면 덕은리 962-2	2022-03-2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6485	35-10-39.6803	127-37-58.7516	중부	286991.58	257659.39	25.530	화개면 덕은리 816-91	2022-03-2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6486	35-10-42.6904	127-37-54.6213	중부	287083.68	257554.29	21.970	화개면 덕은리 818-6	2022-03-2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6487	35-10-48.6475	127-37-54.1033	중부	287267.19	257540.01	21.600	화개면 덕은리 826-11	2022-03-2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6488	35-10-52.6834	127-37-52.8970	중부	287391.37	257508.7	22.560	화개면 덕은리 839-1	2022-03-2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6489	35-11-03.8545	127-37-38.0123	중부	287733.27	257129.91	21.770	화개면 덕은리 941-4	2022-03-2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6490	35-11-09.9904	127-37-29.5125	중부	287921.01	256913.67	21.990	화개면 탐리 758-4	2022-03-2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6491	35-11-14.4052	127-37-27.5206	중부	288056.75	256862.42	21.700	화개면 탐리 750-5	2022-03-22	철재	세계측지계

★ 측량성과 보관장소 : 하동군청 민원과

하동군 고시 제2022-136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7. 15.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250-26 외 1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3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08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 7. 1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이동사유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250-26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송림1길 35-1		20220715	20090302	광평리에 있는 소나무 군락지의 지명에 일련번호방식의 첫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306-37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1길 63-1		20220715	20090302	목도리는 자연마을이름을 사용하여 일련번호방식의 첫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391-3, 391-9, 391-10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571		20220715	20070618	화개면을 통과하는 주요도로로 면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419-1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용강길 10		20220715	20070618	산등성이에 용이 산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산69-18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청룡상촌길 68-184		20220715	20080402	청룡과 상촌을 합성하여 청룡상촌길로 명명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512-5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덕천로 102-45		20220715	20070618	도로구간이 덕천강을 따라 이어지고 있어 강이름에서 도로명부여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감당리 681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경서대로 1393		20220715	20090710	경남의 서부지역을 잇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211-4, 211-5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재첩길 20		20220715	20080402	도로변에 재첩마을이 분포하여 있어 지역적 특색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양포리 351-3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달구지길 144-29		20220715	20070618	옛지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명호리 산81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명사길 17-41		20220715	20070618	명호입구부터 절골까지 도로가 명사길이라 불리워졌기때문에 명사길로 명명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법대리 291-2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법대길 8		20220715	20080402	법대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793-2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양로 79		20220715	20090302	진교면과 양보면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로 진교면의 "진"과 양보면의 "양"으로 도로의 진행방향을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605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산업로 510		20220715	20090710	하동IC에서 광양제철소를 진출입하는 도로로서 산업로로 부여	

# 하천 점용 허가 고시

하동군 제2022 - 138호

「하천법」 제33조 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 7. 18.

하 동 군 수

- 1. 허가번호 : 2022-\*\*-호(비과세 대상지)
- 2. 하천의 명칭 : 괴정천
- 2. 허가연월일 : 2022.07.18.
- 3. 점용자 : 부산시 강서구 에코델타스마트로1길\*\*, 하기\*
- 4. 점용의 목적 : 주택 진출입로
- 5. 점용위치 : 옥종면 회신리 12-2번지
- 6. 점용면적 : 236㎡
- 7. 점용허가 기간 : 2022. 8. 1. ~ 2027. 7. 31.

# 하천 점용 허가 고시

하동군 제2022 - 139호

「하천법」 제33조 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 7. 18.

하 동 군 수

- 1. 허가번호 : 2022-\*\*-호(비과세 대상지)
- 2. 하천의 명칭 : 괴정천
- 2. 허가연월일 : 2022.07.18.
- 3. 점용자 : 부산시 강서구 명지국제6로 \*\*\*번길 \*\*, 공영\*
- 4. 점용의 목적 : 주택 진출입로
- 5. 점용위치 : 옥종면 회신리 12-2번지
- 6. 점용면적 : 236㎡
- 7. 점용허가 기간 : 2022. 8. 1. ~ 2027. 7. 31.

# 하천 점용 허가 고시

하동군 제2022 - 144호

「하천법」 제33조 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 7. 20.

하 동 군 수

1. 허가번호 : 2022-39호
2. 하천의 명칭 : 덕천강
2. 허가연월일 : 2022.02.01.
3. 점용자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23, 하동군수(건설교통과)
4. 점용의 목적 : 숲촌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기본계획에 의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여 농경지 침수 및 재해방지, 영농환경개선, 농가소득증대를 제공
5. 점용위치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종화리 4-4번지 외 11 필지
6. 점용면적 : 909㎡
7. 점용허가 기간 : 영구점용

### 하동군 고시 제2022-143호

지적기준점성과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기준점 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07. 21.

### 하 동 군 수

기준점		지적위상좌표/지적좌표		원점	평면좌표		표고	소재지	설치일 (관측일)	표지 재질	비 고
명칭	번호	위도	경도		X	Y					
지적도근점	W1414	35-14-07.3761	127-44-00.7490	중부	293455.44	266771.94	460.377	청암면 목계리 808-1번지	2022-05-20	기타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1415	35-14-04.2344	127-43-58.6670	중부	293358.23	266720.01	454.209	청암면 목계리 797-1번지	2022-05-20	기타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2212	34-56-57.9756	127-52-50.2390	중부	261839.63	280440.88	2.209	금남면 노량리 826	2022-03-08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2840	35-05-49.9334	127-51-02.2112	중부	278209.84	277560.05	184.147	양보면 우복리 산70-1	2022-02-17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2845	34-59-37.9075	127-47-43.8637	중부	266703.22	272627.58	4.924	금성면 공항리 232-3	2022-06-16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2907	34-55-41.1638	127-49-57.2914	중부	259434.89	276072.14	3.106	금남면 대도리 1779 인근	2022-02-09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2908	34-55-39.8395	127-50-02.7051	중부	259395.22	276209.89	2.891	금남면 대도리 1779 인근	2022-02-09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8782	35-08-56.5964	127-45-13.4281	중부	283891.37	268682.30	349.414	적량면 서리 1791	2022-02-08	기타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8783	35-08-55.6781	127-45-13.6756	중부	283863.12	268688.78	345.462	적량면 서리 산100-1	2022-02-08	기타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8784	35-08-55.6950	127-45-14.8780	중부	283863.87	268719.21	345.656	적량면 서리 759-1	2022-02-08	기타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8785	34-55-40.8605	127-50-04.1421	중부	259426.99	276246.10	2.947	금남면 대도리 1779 인근	2022-02-09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8786	35-05-52.7519	127-50-58.7888	중부	278295.97	277472.62	196.073	양보면 우복리 1004-1	2022-02-17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8787	35-05-50.7144	127-51-00.8432	중부	278233.62	277525.20	187.801	양보면 우복리 999-6	2022-02-17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8788	35-12-25.4339	127-52-07.7616	중부	290413.02	279113.94	160.495	옥중면 안계리 산59-1	2022-02-18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8789	35-12-23.8157	127-52-10.2027	중부	290363.69	279176.12	145.478	옥중면 안계리 산59-1	2022-02-18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8790	35-12-22.0662	127-52-11.5338	중부	290310.07	279210.26	133.522	옥중면 안계리 831	2022-02-18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8791	35-11-39.8013	127-51-03.8620	중부	288992.68	277509.66	114.363	옥중면 위태리 1730-1	2022-02-24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8792	35-04-44.2021	127-48-23.3706	중부	276150.66	273553.22	162.368	황천면 학리 산133-1	2022-03-0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8793	35-04-43.1575	127-48-22.3313	중부	276118.26	273527.14	171.303	황천면 학리 산157-1	2022-03-0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8794	35-04-41.9323	127-48-23.4168	중부	276080.72	273554.95	178.530	황천면 학리 산157-1	2022-03-0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8795	35-04-56.5835	127-45-54.7323	중부	276502.55	269784.64	42.941	적량면 권리 965	2022-03-0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8796	34-56-57.2011	127-52-48.1984	중부	261815.31	280389.32	1.993	금남면 노량리 335-13	2022-03-08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8797	34-56-54.4013	127-52-41.4542	중부	261727.52	280218.94	2.188	금남면 노량리 337-16번지 인근	2022-03-08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8798	34-56-51.7570	127-52-33.9173	중부	261644.35	280028.41	2.827	금남면 노량리 828-1	2022-03-08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8799	35-12-55.7345	127-39-28.2544	중부	291199.27	259896.37	232.461	화개면 정금리 312	2022-03-1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8800	35-12-55.1672	127-39-26.4820	중부	291181.49	259851.65	231.589	화개면 정금리 312	2022-03-1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8816	35-05-59.8393	127-47-57.6999	중부	278476.44	272884.17	18.841	황천면 남산리 257	2022-03-15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8817	35-06-02.5545	127-47-53.1246	중부	278559.18	272767.62	23.455	황천면 남산리 176	2022-03-15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8818	35-06-24.1222	127-47-42.5548	중부	279221.72	272494.60	88.410	황천면 남산리 970-4	2022-03-15	맨홀식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8819	35-06-23.6142	127-47-44.5668	중부	279206.48	272545.68	78.190	황천면 남산리 1187-7	2022-03-15	맨홀식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8820	35-06-22.3134	127-47-46.0879	중부	279166.70	272584.53	71.645	황천면 남산리 912-2	2022-03-15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8821	35-04-46.0866	127-50-45.7796	중부	269836.39	277214.86	25.553	고전면 성평리 155	2022-03-15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8822	35-01-18.3442	127-50-39.0425	중부	269671.89	277045.44	19.577	고전면 성평리 731	2022-03-15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8823	35-01-13.0534	127-50-32.3766	중부	269727.91	276875.96	13.309	고전면 성평리 427-4	2022-03-15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8824	35-01-14.9175	127-50-34.6854	중부	269614.35	276935.45	20.371	고전면 성평리 732	2022-03-15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8825	35-01-11.2165	127-50-35.2015	중부	269500.49	276949.50	29.236	고전면 성평리 732	2022-03-15	맨홀식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8826	35-01-07.5185	127-50-36.2552	중부	269398.65	276977.08	38.737	고전면 성평리 260-4	2022-03-15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8827	35-01-11.4590	127-50-38.3144	중부	269292.46	277030.18	50.902	고전면 성평리 산28	2022-03-15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8828	35-01-04.2067	127-50-29.0058	중부	269468.61	276792.68	22.334	고전면 성평리 288-4	2022-03-15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8829	35-01-12.0026	127-50-24.1952	중부	269619.57	276669.44	12.331	고전면 성평리 737-2	2022-03-15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8830	35-01-05.5184	127-50-14.2145	중부	269634.20	276416.26	11.147	고전면 성평리 493-1	2022-03-15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8831	35-01-00.1482	127-50-16.5439	중부	269434.87	276476.99	13.676	고전면 성평리 527	2022-03-15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8832	35-01-06.5271	127-50-22.3857	중부	269388.77	276625.50	19.685	고전면 성평리 508	2022-03-15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8833	35-01-03.9820	127-50-18.8958	중부	269269.87	276538.01	21.758	고전면 성평리 734	2022-03-15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8834	34-57-13.3015	127-51-06.8877	중부	264034.27	277799.51	78.066	금남면 송문리 산26-6	2022-03-16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8835	34-58-10.2355	127-51-27.1498	중부	264069.53	278313.26	135.518	금남면 송문리 산32-1	2022-03-16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8836	34-58-10.9275	127-51-23.0976	중부	264021.02	278210.87	107.264	금남면 송문리 산32-1	2022-03-16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8837	34-58-07.8913	127-51-20.5652	중부	264046.77	278146.40	107.434	금남면 송문리 산28-10	2022-03-16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8838	34-58-05.8901	127-51-19.2622	중부	263974.25	278113.97	89.593	금남면 송문리 53-1	2022-03-16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8839	34-58-03.6025	127-51-15.3690	중부	263911.73	278015.73	66.746	금남면 송문리 109-3	2022-03-16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8840	34-58-05.2971	127-51-18.4263	중부	263841.89	278093.89	66.852	금남면 송문리 45-1	2022-03-16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8841	34-58-00.1917	127-51-22.5354	중부	263895.01	278197.69	84.472	금남면 송문리 812	2022-03-16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8842	34-58-09.3822	127-51-23.4454	중부	263773.22	278221.82	72.620	금남면 송문리 812	2022-03-16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235	35-13-37.6630	127-44-16.1461	중부	292542.60	267168.07	440.075	청암면 목계리 639	2022-06-1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236	35-14-12.8889	127-38-27.7514	중부	293567.06	258350.80	97.249	화개면 용강리 211-2	2022-06-15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237	35-14-11.8238	127-38-30.5708	중부	293534.70	258422.30	98.837	화개면 운수리 687-4	2022-06-15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238	35-14-13.0426	127-38-34.1153	중부	293572.84	258511.68	108.330	화개면 운수리 694	2022-06-15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239	35-08-20.5035	127-48-33.2058	중부	282818.75	273748.23	58.207	황천면 월평리 91-6	2022-06-16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240	35-08-22.2412	127-48-29.1322	중부	282871.47	273644.67	58.472	황천면 월평리 산3-7	2022-06-16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241	35-08-23.3330	127-48-25.2563	중부	282904.32	273546.28	56.605	청암면 명호리 1516	2022-06-16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242	34-59-29.0473	127-48-03.9370	중부	266434.24	273138.84	5.815	금남면 계천리 1023	2022-06-16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243	34-59-29.0866	127-47-57.5324	중부	266434.15	272976.40	3.316	금남면 계천리 736-159	2022-06-16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244	34-59-37.1902	127-47-46.8531	중부	266681.72	272703.57	4.993	금남면 계천리 736-4	2022-06-16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245	34-59-37.5412	127-47-41.3355	중부	266691.43	272563.55	4.475	금성면 공항리 232-3	2022-06-16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246	35-11-10.1360	127-52-39.0043	중부	288099.36	279924.70	79.282	옥종면 방천리 산36-3	2022-06-2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247	35-11-14.5688	127-52-36.0232	중부	288235.30	279848.07	78.847	옥종면 방천리 897-3	2022-06-2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248	35-14-10.6042	127-44-27.6012	중부	293559.97	267450.18	595.595	청암면 목계리 산139	2022-06-2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249	35-14-11.5623	127-44-25.7270	중부	293589.14	267402.56	583.238	청암면 목계리 461-2	2022-06-2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250	35-14-14.8922	127-44-23.8248	중부	293691.41	267353.70	567.641	청암면 목계리 463-1	2022-06-2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251	35-14-15.6600	127-44-22.9526	중부	293714.91	267331.47	562.008	청암면 목계리 463-1	2022-06-2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252	35-11-24.3722	127-54-04.2952	중부	288557.41	282078.69	62.096	옥종면 방천리 1038	2022-06-21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253	35-11-26.8772	127-54-01.6261	중부	288634.00	282010.47	61.788	옥종면 방천리 1177	2022-06-21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254	35-11-23.6491	127-53-58.8031	중부	288533.86	281939.94	62.032	옥종면 방천리 1232	2022-06-21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255	35-11-27.3577	127-46-54.7736	중부	288557.43	271211.09	217.058	청암면 상이리 416	2022-06-24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256	35-11-26.6455	127-46-54.6102	중부	288535.45	271207.13	215.639	청암면 상이리 415	2022-06-24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257	35-11-25.5278	127-46-54.2850	중부	288500.94	271199.17	206.976	청암면 상이리 산254	2022-06-24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258	35-08-41.5911	127-46-30.7650	중부	283443.97	270643.50	312.945	청암면 명호리 1395-2	2022-06-27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259	35-08-39.9476	127-46-31.5402	중부	283393.47	270663.52	305.801	청암면 명호리 1383	2022-06-27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260	35-08-38.5131	127-46-31.1893	중부	283349.19	270654.98	299.359	청암면 명호리 1382-2	2022-06-27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261	35-09-50.1016	127-55-40.9908	중부	285674.58	284552.22	85.289	옥종면 북방리 636-3	2022-06-28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262	35-09-51.3485	127-55-44.0525	중부	285713.73	284629.35	83.330	옥종면 북방리 897	2022-06-28	맨홀식	세계측지계

★ 측량성과 보관장소 : 하동군청 민원과

# 하천 점용 허가 고시

하동군 제2022 - 145호

「하천법」 제33조 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 7. 20.

하 동 군 수

1. 허가번호 : 2022-40호
2. 하천의 명칭 : 남산천
2. 허가연월일 : 2022.07.25.
3. 점용자 : 경남 하동군 적량면 삼화실로 \*\*, 윤명\*
4. 점용의 목적 : 토지의 점용(수목의 식재)
5. 점용위치 : 하동군 적량면 동리 498
6. 점용면적 : 804㎡
7. 점용허가 기간 : 2022.07.25.~2027.07.24

하동군 고시 제2022 - 146호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병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신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 지정현황 -

지구명	위 치	지정개요			지정사유	비고
		유형	등급	면적(㎡)		
병천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782-2번지 일원	침수 위험	나	990,750	호계천 수위 상승시 내수배제 불량 및 호계천의 통수능력 부족으로 인한 하천 월류로 침수피해 발생	신규

붙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도면 1부(병천지구).

2022. 7. 28.

하 동 군 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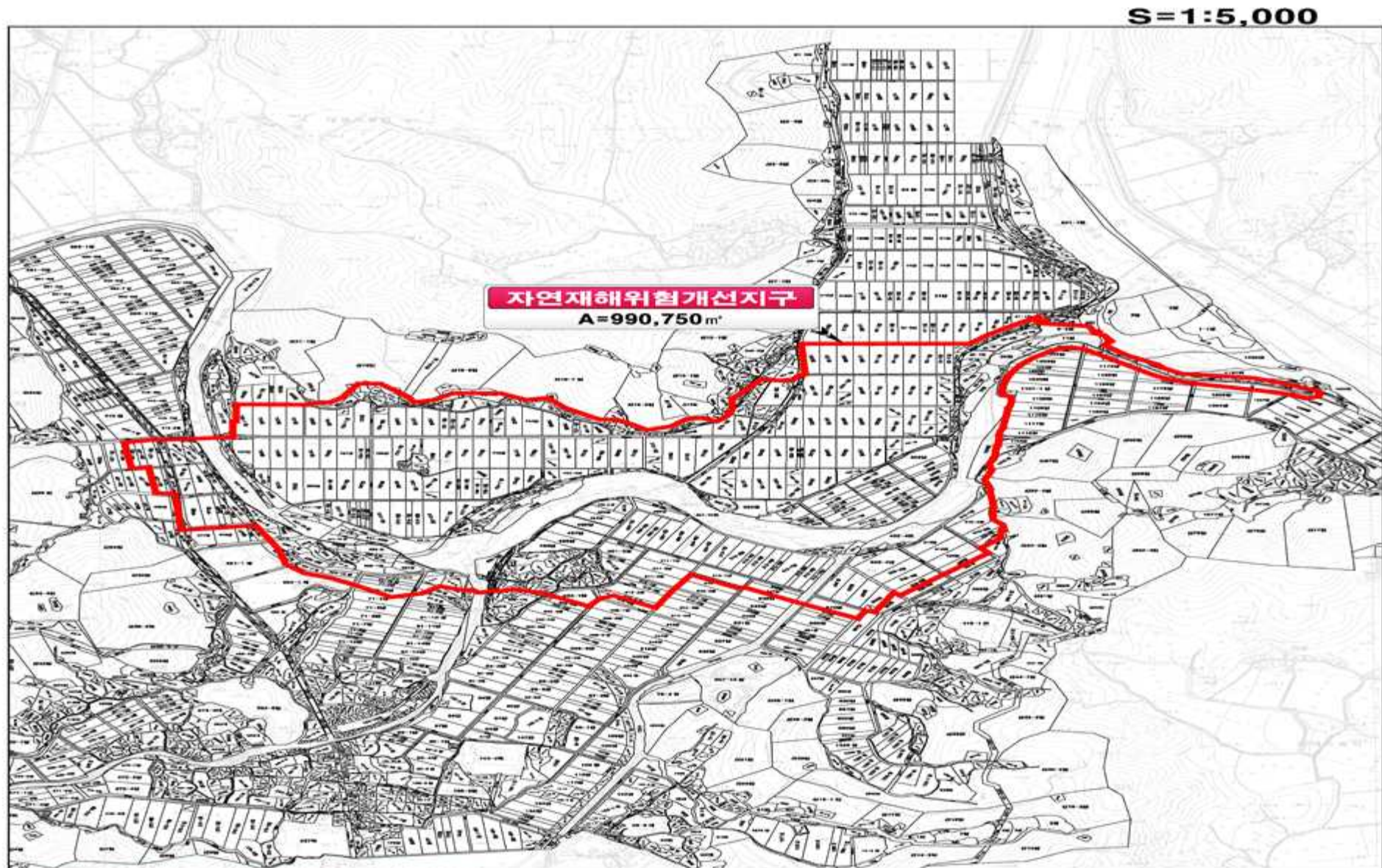
## □ 병천지구

< 위성사진 >





< 지형도면 >



※ 금회 지형도면고시선은 적색으로 표시된 선임



하동군 고시 제2022-147호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28일

## 하 동 군 수

1. 하천공사의 명칭 : 진교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하동군수
  - 나. 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가. 목적 및 사유 : 외수위 상승에 따른 내수배제 불량과 교량 통수능력, 여유고 및 백련천 제방고 부족으로 침수피해 발생  
⇒ 침수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
  - 나. 사업개요 : ◦진교1지구(내수재해) : 배수펌프장 신설 1개소(Q=345m<sup>3</sup>/min), 우수관로 개선 (L=1.2km)  
◦진교2지구(하천재해) : 백련천 제방 축제(L=0.48km), 교량 재가설 3개소
4. 하천공사의 위치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고통리 일원
5. 하천공사의 기간 : 2022. 08. ~2024. 04.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붙임 참조)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시행 기관인 경상남도 하동군 안전총괄과 방재 담당(☎055-880-2253)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하동군 고시 제2022-148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 7. 28.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2-41호
2. 허가연월일 : 2022. 7. 28.
3. 점·사용의 목적 : 식물의 재배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1017-36번지, 1422㎡
5. 점·사용의 기간 : 2022. 7. 28. ~ 2027. 7. 27.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경남 하동군 옥종면 세종태실로\*\*-\*\*, 황용\*

하동군 고시 제2022 - 149호

## 도로명주소 부여 · 변경 · 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변경 및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7. 29.

###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멧골길 26-68 외 1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4건)				

- 도로명주소 변경 :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동로 373 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2건)				

- 도로명주소 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835-18 1건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별 지 참 조(1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08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 7. 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이동사유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하동군옥종면 법대리6-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멧골길 26-68		20220729	20190627	예부터 불리던 멧골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화신리 200-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화신길 32-8		20220729	20080402	화신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하동군옥종면 화신리12-2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돌고지로 1076-1		20220729	20070618	황천과 옥종의 경계지점에 있는 재로서 재를 넘을때 산모퉁이를 돌고 돌아 넘는다고해서 돌고지재라고한 옛지명 사용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화신리 12-2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돌고지로 1076		20220729	20070618	황천과 옥종의 경계지점에 있는 재로서 재를 넘을때 산모퉁이를 돌고 돌아 넘는다고해서 돌고지재라고한 옛지명 사용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하동군악양면 미점리산70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개치미동길 121		20220729	20070618	개치와 미동의 마을명을 합성하여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91-2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403		20220729	20090710	섬진강 지역명 사용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양포리 724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대전방길 31-18		20220729	20070618	대전방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하동군옥종면 공항리807-2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공항길 532-8		20220729	20090302	공항리 법정리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장암리 259-3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우성길 43		20220729	20080402	우성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도리 26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도길 161-12		20220729	20090302	섬이 크다하여 붙여진 섬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1633-7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576-33		20220729	20090710	섬진강 지역명 사용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80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이명골길 37-41		20220729	20070618	마을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949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대축길 2		20220729	20070618	큰 둔이여서 대축이라는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관리 170-4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관동길 42-7		20220729	20070618	관동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이동사유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분할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동로 373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동로 373		20110729	20070618	도시시점이 악양중심으로 부터 동쪽에 위치하여 방향성에 따라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분할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동로 373	경상남도하동군악양면 악양동로373-1		20220729	20070618	도시시점이 악양중심으로 부터 동쪽에 위치하여 방향성에 따라 도로명 부여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이동사유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835-18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20220729	20090702	행정구역명(옥종+단성면) 활용	

하동군 고시 제 2022 - 154호

## 2022년 사방지 변경지정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경상남도 사방지 관리규정」 제2조 제3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22. 08. 03.

### 하 동 군 수

1. 사방지 지정내역 : 붙임참조
2. 지정 사유 : 2022년 사방사업 시행지
3. 변경 사유 :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사항 발생
4. 지정사업의 종류 : 계류보전, 사방댐
5. 행위제한 :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의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는 관할청에 허가를 받아야 함.
6. 사방지 지정고시 관련 도면 열람 및 문의사항은 하동군청 산림녹지과 산림경영담당(☎055-880-248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사방지 지정 조서 및 내역 1부.  
2. 사방지 지정 도면 1부. 끝.

\*자세한 내용은 하동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공고 제2022-1002호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관련  
법정민원 만족도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하동군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일자 : 2022. 7. 13.
- 제공받은 기관 : 행정안전부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 제17조 제1항 제2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제1항
- 이용 목적
  - 행정기관(중앙부처,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인·허가신청 등 법정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행정기관에 법정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의 성명과 전화번호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22년 법정민원 만족도 조사 완료시까지(2022. 11월 예정)
- 공고 기간 : 2022. 7. 14.(목) ~ 7. 29. (금) (16일간)
- 공고 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